|  |  |  |
| --- | --- | --- |
| **증권투자 고문업무 임시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0] 27호  《증권투자 고문업무 임시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0년 10월 12일  **제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투자 고문업무를 규율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증권회사 감독관리 조례》, 《증권, 선물투자자문 관리 임시방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는 증권투자자문업무의 하나의 기본형식으로서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의 위임을 받고 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투자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함과 아울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투자건의서비스 내용에는 투자 품종의 선택, 투자조합 및 재테크 계획건의 등이 포함된다.  **제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적격 관리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기제를 건전히 하고 이익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근면하고 신중하게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고객의 이익보장에 충실해야 하며, 회사 및 그 관련 측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증권투자 고문인원 및 그 이익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기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아니된다.  **제6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종사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종사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직업종사 규범과 행위준칙을 제정한다.  **제7조**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증권투자자문 종업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증권업협회에 등록 등기한 증권투자고문이어야 한다. 증권투자고문은 동시에 증권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  **제8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인원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증권투자 고문인원의 등록등기, 포지션 직책, 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9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 관리제도, 적격 관리 및 리스크통제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하여 업무추진, 계약서 체결, 서비스제공, 고객 탐방, 신고처리 등 업무단계를 아우러야 한다.  **제10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 고문인원의 인수, 업무능력, 적격관리 및 리스크통제와 서비스방식, 업무규모가 서로 어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회사가 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원, 재산과 소득상황, 증권투자경력, 투자수요 및 리스크선호를 파악하여 고객의 리스크 수용능력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에게 아래의 기본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회사명칭, 주소, 연락방식, 신고전화, 증권투자 자문업무자격 등  (2) 증권투자고문의 이름 및 그 증권투자자문 직업자격증 번호  (3)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4) 투자결정은 고객이 하고 투자리스크는 고객이 자부담  (5) 고객을 대신하는 증권투자고문의 투자결정은 불허.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영업장소, 중국증권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전 항 제(1), (2)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조회,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고객에게 리스크 고지서를 제공하고 고객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고지서의 내용과 서식은 중국증권업협회에서 제정한다.  **제1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과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는 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3) 증권투자고문의 직책과 금지행위  (4)비용수취기준 및 지불방식  (5) 쟁의 또는 분쟁 해결방식  (6) 계약서의 종료 또는 해지 조건과 방식.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는 동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음을 약정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계약서를 해지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시부터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가 해지된다.  **제15조** 증권투자고문은 그가 파악한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고객의 리스크부담 능력과 서비스 요구를 평가하는 토대에서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투자건의 근거에는 증권연구보고서, 또는 증권연구보고서나 이론모델 또는 분석방법에 기하여 형성된 투자분석의견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연구가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증권투자 자문서비스 자격을 구비한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자문기구로부터 증권연구보고서를 구매하여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18조** 증권투자고문이 본 회사 또는 기타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투자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권연구보고서의 발표자, 발표일자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투자리스크를 제시해야 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그 투자건의와 불일치한 관점을 제시하여 고객의 투자리스크 평가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0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함에 있어서 그가 알고 있는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 시에는 고객탐방 기제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탐방절차, 내용 및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2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 시에는 고객의 신고처리 기제를 구축하여 고객의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공정, 합리,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요금기준을 약정해야 한다. 서비스비용은 서비스기간, 고객의 자산규모에 따르거나 또는 차별화 수수료 등 기타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다.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은 회사계좌로 수취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개인의 명의로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의 추진 및 고객 모집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서비스능력과 과거 실적에 대한 허위, 부실, 오도적인 판촉선전은 금지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증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25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한 광고와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법》과 증권정보전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선전내용에 허위, 부실, 오도적인 정보 또는 기타 불법, 규정위반 상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5일 근무일 전에 광고 선전방안과 시간배정 상황을 소재지 증권감독관리국, 매체 소재지의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6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설명회, 보고회, 분석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증권투자 고문업무 선전과 고객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근무일 전에 회의 개최지의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 등 캐리어로 고객에게 투자건의나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기능에 대한 허위, 부실, 오도적인 선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의 고유의 결함과 사용리스크를 제시해야 하며, 속이거나 중대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가 사용하는 데이터정보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가 증권투자 제품을 선택하거나 매매 시기를 제시하는 기능을 설명 시에는 그 방법과 제한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28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의 선전, 계약서 체결, 서비스 제공, 고객 탐방, 신고처리 등 단계에 대한 흔적 관리를 실시한다.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제공하는 시간, 내용, 방식 및 의거 등 정보는 서면으로나 전자파일 형식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증권투자 고문업무 보존서류의 보관기간은 계약서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저 5년으로 한다.  **제29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증권투자 고문의 직업의식, 적격의식 및 전문서비스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0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합작방식으로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방식, 보수지급, 신고처리 등에 대해 약정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인원을 안배하여 증권정보 전파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거시 경제, 업계상황, 증권시장의 변화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중한 평가의견을 발표하여 공중 투자자에게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권지식을 전파하고 투자리스크를 제시함으로써 이성적 투자를 인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2조** 증권투자고문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증권을 매입, 매각 또는 소지하는 투자건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시정 명령, 감독관리 면담, 경고서 제시, 내부 적격검사 횟수 증가 명령 및 적격검사 보고서 제출, 규정위반 업무정리 명령, 신규 고객증가 당분간 정지 명령, 유관 관계자 처분 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34조** 증권회사가 증권 브로커업무에 종사할 때, 추가로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하되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단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을 단독으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건의서비스 행위는 이 규정의 관련 요구를 참조 집행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证券投资顾问业务暂行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2010〕27 号  现公布《证券投资顾问业务暂行规定》，自2011年1月1日起施行。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二○一○年十月十二日  **第一条** 为了规范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行为，保护投资者合法权益，维护证券市场秩序，依据《证券法》、《证券公司监督管理条例》、《证券、期货投资咨询管理暂行办法》，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证券投资顾问业务，是证券投资咨询业务的一种基本形式，指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接受客户委托，按照约定，向客户提供涉及证券及证券相关产品的投资建议服务，辅助客户作出投资决策，并直接或者间接获取经济利益的经营活动。投资建议服务内容包括投资的品种选择、投资组合以及理财规划建议等。  **第三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加强合规管理，健全内部控制，防范利益冲突，切实维护客户合法权益。  **第四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及其人员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勤勉、审慎地为客户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  **第五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及其人员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应当忠实客户利益，不得为公司及其关联方的利益损害客户利益；不得为证券投资顾问人员及其利益相关者的利益损害客户利益；不得为特定客户利益损害其他客户利益。  **第六条** 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依法对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实行监督管理。  中国证券业协会对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实行自律管理，并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制定相关执业规范和行为准则。  **第七条** 向客户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的人员，应当具有证券投资咨询执业资格，并在中国证券业协会注册登记为证券投资顾问。证券投资顾问不得同时注册为证券分析师。  **第八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制定证券投资顾问人员管理制度，加强对证券投资顾问人员注册登记、岗位职责、执业行为的管理。  **第九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建立健全证券投资顾问业务管理制度、合规管理和风险控制机制，覆盖业务推广、协议签订、服务提供、客户回访、投诉处理等业务环节。  **第十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应当保证证券投资顾问人员数量、业务能力、合规管理和风险控制与服务方式、业务规模相适应。  **第十一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向客户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应当按照公司制定的程序和要求，了解客户的身份、财产与收入状况、证券投资经验、投资需求与风险偏好，评估客户的风险承受能力，并以书面或者电子文件形式予以记载、保存。  **第十二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向客户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应当告知客户下列基本信息：  （一）公司名称、地址、联系方式、投诉电话、证券投资咨询业务资格等；  （二）证券投资顾问的姓名及其证券投资咨询执业资格编码；  （三）证券投资顾问服务的内容和方式；  （四）投资决策由客户作出，投资风险由客户承担；  （五）证券投资顾问不得代客户作出投资决策。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通过营业场所、中国证券业协会和公司网站，公示前款第（一）、（二）项信息，方便投资者查询、监督。  **第十三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向客户提供风险揭示书，并由客户签收确认。风险揭示书内容与格式要求由中国证券业协会制定。  **第十四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应当与客户签订证券投资顾问服务协议，并对协议实行编号管理。协议应当包括下列内容：  （一）当事人的权利义务；  （二）证券投资顾问服务的内容和方式；  （三）证券投资顾问的职责和禁止行为；  （四）收费标准和支付方式；  （五）争议或者纠纷解决方式；  （六）终止或者解除协议的条件和方式。  证券投资顾问服务协议应当约定，自签订协议之日起5个工作日内，客户可以书面通知方式提出解除协议。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收到客户解除协议书面通知时，证券投资顾问服务协议解除。  **第十五条** 证券投资顾问应当根据了解的客户情况，在评估客户风险承受能力和服务需求的基础上，向客户提供适当的投资建议服务。  **第十六条** 证券投资顾问向客户提供投资建议，应当具有合理的依据。投资建议的依据包括证券研究报告或者基于证券研究报告、理论模型以及分析方法形成的投资分析意见等。  **第十七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为证券投资顾问服务提供必要的研究支持。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的证券研究不足以支持证券投资顾问服务需要的，应当向其他具有证券投资咨询业务资格的证券公司或者证券投资咨询机构购买证券研究报告，提升证券投资顾问服务能力。  **第十八条** 证券投资顾问依据本公司或者其他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的证券研究报告作出投资建议的，应当向客户说明证券研究报告的发布人、发布日期。  **第十九条** 证券投资顾问向客户提供投资建议，应当提示潜在的投资风险，禁止以任何方式向客户承诺或者保证投资收益。  鼓励证券投资顾问向客户说明与其投资建议不一致的观点，作为辅助客户评估投资风险的参考。  **第二十条** 证券投资顾问向客户提供投资建议，知悉客户作出具体投资决策计划的，不得向他人泄露该客户的投资决策计划信息。  **第二十一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应当建立客户回访机制，明确客户回访的程序、内容和要求，并指定专门人员独立实施。  **第二十二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应当建立客户投诉处理机制，及时、妥善处理客户投诉事项。  **第二十三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按照公平、合理、自愿的原则，与客户协商并书面约定收取证券投资顾问服务费用的安排，可以按照服务期限、客户资产规模收取服务费用，也可以采用差别佣金等其他方式收取服务费用。  证券投资顾问服务费用应当以公司账户收取。禁止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及其人员以个人名义向客户收取证券投资顾问服务费用。  **第二十四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规范证券投资顾问业务推广和客户招揽行为，禁止对服务能力和过往业绩进行虚假、不实、误导性的营销宣传，禁止以任何方式承诺或者保证投资收益。  **第二十五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通过广播、电视、网络、报刊等公众媒体对证券投资顾问业务进行广告宣传，应当遵守《广告法》和证券信息传播的有关规定，广告宣传内容不得存在虚假、不实、误导性信息以及其他违法违规情形。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提前5个工作日将广告宣传方案和时间安排向公司住所地证监局、媒体所在地证监局报备。  **第二十六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通过举办讲座、报告会、分析会等形式，进行证券投资顾问业务推广和客户招揽的，应当提前5个工作日向举办地证监局报备。  **第二十七条** 以软件工具、终端设备等为载体，向客户提供投资建议或者类似功能服务的，应当执行本规定，并符合下列要求：  （一）客观说明软件工具、终端设备的功能，不得对其功能进行虚假、不实、误导性宣传；  （二）揭示软件工具、终端设备的固有缺陷和使用风险，不得隐瞒或者有重大遗漏；  （三）说明软件工具、终端设备所使用的数据信息来源；  （四）表示软件工具、终端设备具有选择证券投资品种或者提示买卖时机功能的，应当说明其方法和局限。  **第二十八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对证券投资顾问业务推广、协议签订、服务提供、客户回访、投诉处理等环节实行留痕管理。向客户提供投资建议的时间、内容、方式和依据等信息，应当以书面或者电子文件形式予以记录留存。  证券投资顾问业务档案的保存期限自协议终止之日起不得少于5年。  **第二十九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应当加强人员培训，提升证券投资顾问的职业操守、合规意识和专业服务能力。  **第三十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以合作方式向客户提供证券投资顾问服务，应当对服务方式、报酬支付、投诉处理等作出约定，明确当事人的权利和义务。  **第三十一条** 鼓励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组织安排证券投资顾问人员，按照证券信息传播的有关规定，通过广播、电视、网络、报刊等公众媒体，客观、专业、审慎地对宏观经济、行业状况、证券市场变动情况发表评论意见，为公众投资者提供证券资讯服务，传播证券知识，揭示投资风险，引导理性投资。  **第三十二条** 证券投资顾问不得通过广播、电视、网络、报刊等公众媒体，作出买入、卖出或者持有具体证券的投资建议。  **第三十三条** 证券公司、证券投资咨询机构及其人员从事证券投资顾问业务，违反法律、行政法规和本规定的，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可以采取责令改正、监管谈话、出具警示函、责令增加内部合规检查次数并提交合规检查报告、责令清理违规业务、责令暂停新增客户、责令处分有关人员等监管措施；情节严重的，中国证监会依照法律、行政法规和有关规定作出行政处罚；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三十四条** 证券公司从事证券经纪业务，附带向客户提供证券及证券相关产品投资建议服务，不就该项服务与客户单独作出协议约定、单独收取证券投资顾问服务费用的，其投资建议服务行为参照执行本规定有关要求。  **第三十五条** 本规定自2011年1月1日起施行。 |